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(전홍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5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7.

발의의원 : 전홍배 의원, 최재규 의원,
서도원 의원, 박주용 의원, 이연숙 의원

1. 제안이유

최근 「노인복지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, 대구광역시 달성군 또한 다가오는 초고령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 이에, 고령친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3조)
- 나. 시행계획 및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8조)
- 다.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5조)
- 라.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
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(붙임)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노인복지법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고령친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고령친화”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건강, 사회참여, 안전 등이 보장되어 질 높은 사회생활을 지역사회 내에서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고령친화도시”란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의3을 따른다.

제3조(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고령친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은 군수가 추진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시행계획 수립 등)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연도별

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의3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20조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, 「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」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2. 분야별 발전시책,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
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
4.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생활환경 조성) 군수는 고령친화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
2. 노인의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
3.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
4.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사회환경 조성) 군수는 고령친화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의 일자리 개발과 보급,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 훈련
2.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
3. 노인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
4. 평생학습 및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
5. 노인 상담 및 노인 권익 보호 지원
6. 취약계층 노인 돌봄 지원
7. 노인에 대한 존경 및 배려를 위한 효(孝)문화 환경 조성
8.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지역사회 조성) 군수는 고령친화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
2. 노인주거·의료·여가·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
3.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·복지 연계 체계 구축
4. 노인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사업
5. 노인 건강진단, 보건교육과 건강상담
6.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9조(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)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

한다)를 들 수 있다.

1. 계획의 수립 · 시행
2. 정책 및 사업
3. 연구, 인력 양성 및 환경 구축
4.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복지 · 보건 · 문화 · 일자리 · 주택 · 교통 업무 소관 국 · 소장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

가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2명 이내

나.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

다. 노인분야 전문가

라. 그 밖에 노인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11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
2. 질병, 사망,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
3. 품위손상, 위원으로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5조(수당 등) 군수는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)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

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(이하 “모니터링단” 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모니터링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 하되, 단원은 복지·보건·문화·일자리·주택·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③ 모니터링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하여 조사·점검하고,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 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단 단원에게 전항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8조(교육 및 홍보)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.

제19조(포상)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군민, 단체, 공무원 등에 대하여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노인복지법」(2024. 1. 23. 일부개정, 2026. 1. 24. 시행)

제4조의3(고령친화도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, 돌봄 및 안전,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고령친화도시”라 한다)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·취소,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.

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(2021. 12. 30. 일부개정, 2021. 12. 30. 시행)

제5조(인구정책 시행계획)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2.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·추진에 관한 사항
3. 인구교육·홍보 등 군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

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(2024. 1. 23. 일부개정, 2024. 4. 24. 시행)

제20조(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) ① 정부는 저출산·고령사회 중·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, 이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,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

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.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
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4. 그 밖에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④ 삭제

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」 (2024. 10. 30. 제정, 2024. 10. 30. 시행)
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,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2. 분야별 발전시책,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
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
4.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에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친화도시 구성에
관한 조례안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**

1. 재정수반요인

- 고령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(제5조)에 따른 환경(생활, 사회, 지역사회)구성(제6조~제8조)
- 고령친화도시 구성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 수당지급(제15조), 모니터링단 실비지급(제16조)
-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(제18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(제3조제2항제2호)

3. 미첨부 사유

- 고령친화도시 구성에 있어 고령을 포함한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WHO(세계보건기구)가 제시한 8대 영역을 포함하여야 함
-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사업이 8대 영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, 배정 결과 부족한 영역은 어디인지 등 예산을 수반하기 이전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음
- 따라서 현 시점 비용추계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판단됨

작 성 자

소 속 및 직 위

달 성 군 의 회 의 원

성 명 (연 락 처)

전 홍 배 (☎ 2058)